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하나로 적격 TDF 20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10 월 30 일
3. 정정사유 : 운용 및 투자제한 문구 추가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**나. 투자 제한**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. ~ 나. (생략) 다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 <이하 생략>	**나. 투자 제한**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 <이하 현행과 동일>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하나로 적격 TDF 20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10 월 30 일
3. 정정사유 : 운용 및 투자제한 문구 추가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**효력발생일**	-	2026 년 10 월 30 일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**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10 월 30 일
3. 정정사유 : 운용 및 투자제한 문구 추가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17조(운용 및 투자제한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~4. (생략) 5.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~나. (생략) 다.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,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<이하 생략>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~4. (현행과 동일) 5.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 ~나. (현행과 동일) 다.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<이하 현행과 동일>
부칙	-	**(변경시행일)**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